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5
----------	-----

2020. 9. 1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7. 2. 김세준 의원 등 7명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0. 9. 17.)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세준 의원)

-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자동차 승하차시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어르신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에 따라 김세준 의원 등 7명 으로부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자동차 승하차시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어르신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된 안건임
- 본 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에서 규정한 장애인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여야 하는 각종 시책 중에서 어르신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음
- 안 제2조(정의)제2호에서 “어르신 탑승 자동차”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2))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1년 이상 대여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하였음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또한, 제3호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규정하였음.

한편, 제2호의 “어르신 탑승 자동차”에는 ‘어르신 운전자 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나, 조례명 중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제3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등으로 규정(표현)되어 있어, 우선주차구역 대상자에 어르신 운전자도 포함된다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어르신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어르신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적극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 에 따른 공영주차장’,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 표시를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어르신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한편, 제4항에서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규모 및 세부 설치 기준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4)에 각각

-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
- 제11조의3(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안내 표시, 규모 및 세부 설치 기준의 설명은 요구됨

○ 안 제5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등)는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과 주차표지의 발급방법 등에 대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참고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의 발급 방법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5)에

-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7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①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④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주차 표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에, 본 조례 제정은 어르신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 현황⁷⁾’, 등을 감안하면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인 운영방안 등의 논의는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본 조례안에 따르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르신이 탑승한 복지시설 차량으로 국한되어 있던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라는 용어는 어르신 운전자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보이므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 답 변 :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질 의 :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에게 주차표지 발급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7) 유사 조례제정현황(2020년 5월 현재) : 서울특별시(임산부), 금천구(노인·임산부), 노원구(어르신), 서초구(어르신), 영등포구(노인·임산부), 성남시(어르신)

- 답 변 : 주차표지 발급은 노인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주차장애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계획임
- 질 의 : 어르신이 탑승한 복지시설차량이 주차하기가 어려워 길가에 잠시 주차를 하는 것이 위험하고 불편한 것은 맞지만,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면 평상시에 다른 차량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 답 변 : 본 조례안은 어르신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예우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시설차량이 어르신을 모시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어르신들을 하차시켜드리고 주차를 하고 오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려는 것이며,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다르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평상시에 주차면을 꼭 비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질 의 : ‘안 제2조제2호나목에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복지시설에서 차량을 임의로 대여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대여 받거나 임차하는 차량으로 제한한 것임
- 질 의 : 본 조례 제정 취지가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르신이 탑승한 복지시설 차량의 경우 제한 없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

대여 받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기간을 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 답 변 : 관련 조문을 삭제해도 될 것으로 보임

○ 질 의 : 향후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홍보 계획은

○ 답 변 : 대상 복지시설에는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구청 홈페이지 및 강남 소식지, 동별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구민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이재민 의원으로부터 조례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용어를 수정하고,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85호

발의일자 : 2020. 09. 17..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의 제출 취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수정함(제명)
- 조례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를 수정하고,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 조례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를 수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나목 중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각각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각각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하고, “구청장이 정한다”를 “노인관련 소관부서에서 정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중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u></p> <p>제2조(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나.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u>대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 용하는 자동차</u> 다. (생 략) 3. “<u>어르신 우선주차구역</u>”이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우선하 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 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을 예우하고 배 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하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 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 도록 <u>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u></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가. (제정안과 같음) 나. ----- ----- <u>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u> 다. (제정안과 같음) 3. “<u>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 구역</u>”----- ----- -----.</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 ----- ----- ----- ----- ----- ----- -- <u>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u></p>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 입구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규모 및 세부 설치 기준은 어르신 탑승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

구역-----.

제4조(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 구역 설치 등) ① -----
-----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

1.~ 3. (제정안과 같음)

②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 구역은 -----

-----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

③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 구역-----

-----.

④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 구역-----

-----.

제5조(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③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자동차의 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

구역 표지의 발급 등) ① -----

-----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
-----.

② -----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

-----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

③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

----- 노인관련 소관부서에서 정한다.

제6조(자동차의 이동 조치) -----

----- 어르신 시설 차량 우선주차구역-----

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세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5
----------	-----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김세준·김진홍·안지연·
이향숙·복진경·김광심·
문백한(이상7인)

1. 제안이유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자동차 승하차시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어르신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나.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 탑승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어르신 탑승 자동차”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탑승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노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나.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3.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영 주차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3.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탑승 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②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 입구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④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규모 및 세부 설치 기준은 어르신 탑승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③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자동차의 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탑승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